## 2시간 이내 국내항공 운송지연, 항공사 과실이라도 피해보상 못 받아

소득 향상 및 여가 증대, 저비용 항공사의 활성화 등으로 항공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불충분한 보상기준으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.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항공서비스의 운송지연을 경험한 소비자 1천 명을 대상\*으로 조사한 결과, 평균 지연시간은 국내여객은 73분이었고 국제여객은 108분이었다.



## 운항시간 짧지만 지연시간 평균 73분으로 신속성 무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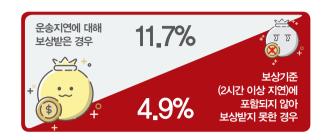
A 씨는 제주발 청주행 항공편에 탑승, 이륙을 위해 활주 로로 이동 중 기체 결함이 발견돼 터미널로 복귀했다. 이 후 약 50여 분 동안 기내에서 대기하다 항공기에서 내린 후 터미널에서 추가 대기하여 예정보다 약 2시간 30분 지 연된 시간에 출발하게 됐다. A 씨와 같이 운송지연 사례 등 국내항공 이용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, 국내여행자의 목적지 도착시간이 당초 시각 보다 지연된 시간은, 60~119분이 37.4%(187명)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30~59분으로 32.0%(160명)였다. 120분 (2시간) 이상 지연된 경우는 18.2%(91명)였다.

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이 항공사에게 유송지연의 책임을 부과하는 최저 기준은 국내외 항공여객 모두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동일하다. 국내여객은 김포~제주의 운 항 시간이 70분 정도로 운항 시간이 짧은 점과 운송의 신 속성에 대한 소비자 기대를 고려할 때,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국내선 유송지연에 대한 보상인정 기준을 현행 2시 간에서 1시간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.

## 운송지연의 면책사유. 항공사가 책임 회피하는 근거로 오남용

소비자 조사결과(802명), 운송지연 시 항공사가 소비자에 게 운송지연 사실을 고지한 경우는 91.4%(733명)였으며, 지연 이유를 고지한 경우는 85.5%(627명)였다. 특히 운송 지연 피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소비자(883명) 중. 항공 사가 보상하지 않은 근거인 운송지연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사례는 19.5%(172명)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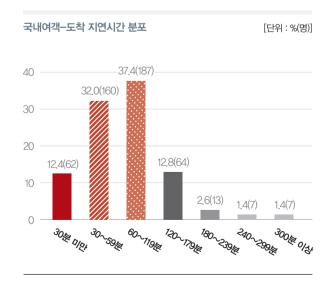
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은 운송지연이 불가항력적 사유\*로 발생한 경우는 항공사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. 항공사는 유송지연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유



송지연의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운송지연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에게 면책사유를 증명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크다.

\*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서는 항공사의 면책사유로 기상상태, 공항사정, 항 공기 접속관계,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을 명시하 고 있음

한국소비자원은 항공교통 이용소비자의 운송지연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여객 유 송지연의 항공사 보상인정 기준을 1시간 이상~2시간 이 내 구간을 신설하고 운송지연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항공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의 개 정(안)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여 개정 완료되었다.





예를 들어, 소비자 B 씨가 구매한 오전 10:00 부산 출발 김포행 항공권은 당일 김포 08:00 출발 부산 09:00 도착하는 항공기를 다시 이용하는 것으로써 김포 출발이 1시간 지연되어 부득이 소비자 B 씨의 항공기도 지연